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연월일 : 2023. 1.

발 의 자 : 최은하,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김영미, 남해석,
신종갑, 장정희, 차해영,
채우진, 한선미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2월 7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 이유

- 2022년 8월 31일, 서울시는 일방적인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마포구 건립계획’을 발표하였다. 마포구 소각장 입지선정은 마포 구민들과의 아무런 소통 없이 이루어진 전형적인 폐쇄 불통행정의 결과이며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결여된 일방적이고 오

만한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임.

○ 이에 마포구의회는 ‘신규 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선정 백지화 촉구 결의안’ 의결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불공정하고 위법한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전면적 대응에 돌입하고, 마포구의회와 마포구민은 소각장 선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자 함.

○ 마포구의회는 서울시의 편파적이고 졸속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및 위법 사항을 분명히 밝히고자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쓰레기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함.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원회 조례」 제7조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022년 8월 31일, 서울시는 일방적인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마포구 건립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의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 입지 선정 발표는 마포구민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이루어진 전형적인 폐쇄 불통행정의 결과이며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결여된 일방적이고 오만한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다.

○ 서울시는 2019년 5월 신규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위해 공모하였으나, 공모 신청한 자치구가 없는 것을 이유로 이러한 예민한 문제를 충분한 여론 수렴 및 숙의 과정 없이 ‘입지선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2020년 12월 15일 설치하였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등과 관련한 법 위반 사항에도 서울시의 쓰레기문제를 일방적으로 마포구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서울시의 부당한 결정에 마포구의회는 2022년 9월 2일 ‘신규 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선정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를 시작으로 민·관이 하나 되어 서울시의 불공정하고 위법한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전면적 대응에 돌입한다.

○ 앞으로 마포구의회는 마포구민과 함께 서울시의 편파적 밀실·졸속 행정을 비판하고, 신규소각장 선정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 이에 마포구의회는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 절차 및 결과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과 위법성을 파헤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추진하고자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09.2.5>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 3. 22.>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